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88
----------	-----

2018년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이동현 의원 외 15명
- 나. 발 의 일 : 2018년 10월 17일
- 다. 회 부 일 : 2018년 10월 29일
- 라. 상 정 일 : 제28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11월 2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동현 의원)

가. 제안 이유

-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정부의 다양한 청년 정책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청년실업률도 주요국들과 달리 유독 악화 추세를 보여 청년문제가 국가적 재난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음.

-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각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정부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다수의 부처가 청년문제를 나누어 담당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특히,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방면에 걸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령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 청년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저해하고 있음.
-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통일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국가적 재난 수준인 청년실업률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걸친 다양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문

- 국가의 앞날을 책임질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인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국회와 관계부처에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건의안은 최근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청년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국회에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김혜영 의원의 12인이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과 7개의 청년관련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 발 의 경 과 >

법률명	발의자	발의일자	회부일	상정일	소관위
청년 기본법안	신보라의의원 등 122인	2016.05.30.	2016.6.13.	2016.11.3.	기획재정위원회
청년 기본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6.08.24.	2016.9.27.	2016.11.17.	여성가족위원회
청년정책기 본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2016.08.17.	2016.9.27.	2016.11.17.	여성가족위원회
청년발전기 본법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2016.12.02.	2016.12.5.	미상정	여성가족위원회
청년 기본법안	박주민의원 등 26인	2017.04.13.	2017.4.17.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청년발전지 원기본법안	강창일의원 등 12인	2017.06.30.	2017.7.3.	2017.11.10.	기획재정위원회
청년 기본법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2018.2.19.	2018.2.20.	2018.9.19.	기획재정위원회
청년 기본법안	이명수의원 등 18인	2018.5.21.	2018.8.31.	미상정	여성가족위원회

< 청년 관련 기본법 발의 현황 >

구분	신보라의원안 (‘16.05.30.)	박주민의원안 (‘17.04.13.)	강창일의원안 (‘17.06.30.)	채이배의원안 (‘18.02.19.)	박홍근의원안 (‘16.08.17.)	이원욱의원안 (‘16.08.24.)	김해영의원안 (‘16.12.02.)	이명수의원안 (‘18.05.21.)
제명	청년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지원 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 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청년발전 기본법안	청년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청년의 정의	19세~39세	19세~34세	18세~39세	18세~34세	19세~34세	19세~39세	19세~34세	19세~34세
기본계획 수립주체	기재부장관	기재부장관	기재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기재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심의 및 조정기구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발전지원 위원회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발전 위원회	청년정책 위원회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청년정책조정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대통령 소속	대통령 소속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 기본시책	참여확대 고용지원 주거지원 창업지원 문화활동 지원 능력개발 지원 심리상담 지원 봉사활동 지원	정책결정 참여 능력개발 지원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지원 주거안정 부채경감 문화활동 지원 권리보호	권리보호 정책결정 참여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문화활동 지원 청년단체 지원	권리보호 정책결정 참여 정치참여 고용촉진 인적자원 개발 복지증진 문화활동 지원 청년단체 지원	참여확대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국제협력 봉사활동 지원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주거안정 금융지원 출산 등 지원 복지증진 청년문화 국제협력	정치참여 고용촉진 능력개발 창업지원 국제협력 봉사활동 지원	고용촉진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청년지원금	-	청년지원금	-	-	청년수당	청년생활 지원금	-	-
기금 설치	-	-	청년발전 지원기금	청년지원 기금	-	-	-	-

- 청년 실업, 빈곤 등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종합적 대책 마련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특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대로, 언론보도¹⁾에 따르면 체감 실업률은 23%이고,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에 2배를 상회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또한, 청년의 주거 빈곤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청년 및 전체 실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108.9
전체	3.6	3.7	3.4	3.2	3.1	3.5	3.6	3.7	3.7	3.6
청년	8.1	8.0	7.6	7.5	8	9	9.1	9.8	9.8	10.1

주: 청년실업을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중에서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정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5

- 한편,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 기술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불평등의 확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은 특히 다음세대인 청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일자리 규모 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에서도 청년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성, 아동, 노인, 청소년 등과 같은 계층의 정책적 지원은 법적 근거²⁾를 바탕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나, 청년의

1) [출처: 중앙일보] 청년실업률 10%...99년 이후 가장 높아 “체감 실업률은 23%“, 2018.9.12

2)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경우에는 소관 법령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및 지원 시스템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것임.

- 이에 따라 청년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포함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청년세대의 과소 대표 방지, 세대균형적인 국정 운영 및 청년정책의 통일적인 추진 체계를 확보하고 청년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은 최근 악화되고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취업난·주거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 더욱이 청년실업률이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청년문제가 국가적 재난수준에 해당하는 위험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과 질, 고용률 측면에서 청년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2018년도 상반기에 청년부채는 59조를 넘어섰으며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2조원 가까이 증가한 금액으로 청년부채는 매년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파산 신청한 20대는 780명으로 4년전 보다 60% 증가하였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20대만 파산신청자 수가 늘어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의 굴레에 갇히고 있는 현 사회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청년층의 주거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하여 전국 청년 주거 빈곤율은 2017년 기준 47.1%(20대), 14.1%(30대)로 청년 주거 빈곤율은 2014년 대비 30대는 6.8%p 감소하였으나 20대는 7.5%p 증가하고 있어 청년 상당수가 주거문제에 있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 이 밖에도 학자금 부담에 따른 학업중단이나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신용악화 등의 악순환과 대학졸업 이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등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갈수록 악화 되어 가고 있다.
- 정부가 청년층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어 놓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이 미봉책에 불과하고 추진부서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곤란하고,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 아울러,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기본법은 제정되어 있는 반면에, 청년층을 위한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한 청년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 확보가 더욱더 요구된다.
-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성장잠재력을 지원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